



즉시 배포용: 2025년 1월 22일

KATHY HOCHUL 주지사

소비자 보호: **HOCHUL** 주지사, 저소득층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착취적인 초과 인출 수수료 단속

금융서비스부, 초과 인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착취 수수료 관행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규정 제안

소비자를 보호하고 돈을 뉴욕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Hochul 주지사의 2025년 시정 연설 제안의 일부

Hochul 주지사가 최근 발표한 2025 시정 연설의 일환으로, Hochul 주지사는 오늘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가 불공정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된 규정](#)을 게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소비자는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 인출 수수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며, 은행은 투명성 개선을 위해 초과 인출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통지해야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겨진 수수료와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는 뉴욕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은행에 책임을 묻고 사소한 거래에 대한 높은 초과 인출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의 **Adrienne Harris** 감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제공되는 제품과 이를 제공하는 제공업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건전한 시장이 조성됩니다. 오늘 제안된 규정은 소비자가 은행 계좌에 제공되는 당좌 대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놀랍고 불균형한 수수료를 더 이상 부과받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된 규정은 가장 착취적이고 기만적인 은행 수수료를 없애고, 초과 인출 수수료를 제한하며,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더 엄격한 거래 처리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주정부 공인 은행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20달러 미만의 초과 인출 시 초과 인출 수수료 부과.

- 초과 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 인출 수수료 청구.
- 소비자 계좌당 하루에 초과 인출 또는 자금 부족(NSF) 수수료 3회 이상 부과.
- 즉시 거부된 전자 거래에 대해 NSF 수수료 부과.
- 판매자가 거부된 거래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해 여러 NSF 또는 초과 인출 수수료 부과.
- 초과 인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는 날마다 '지속적', '계속적' 또는 '일일'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다른 계좌에서 자금을 자동으로 이체하는 수수료 한 개와 초과 인출 자체에 대해 두 번째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초과 인출을 처리하기 위해 두 배의 수수료 부과.
- 초과 인출 및 NSF 수수료 수를 최대로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전자 이체 거래 처리.
-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 소비자 계좌에 잔액이 충분하다고 표시된 경우 전자 거래에 대해 초과 인출 수수료 부과.

2022년에 금융서비스부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의 뉴욕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주는 불공정 초과 인출 및 NSF 수수료(종종 '정크 수수료') 관행에 대한 기대에 대해 기관에 경고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에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DFS에 불공정 은행 수수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의 경제성 의제는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고 필수 서비스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뉴욕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착취 수수료 근절부터 저렴한 주택 및 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이르기까지 주지사는 모든 거주자를 위해 보다 공평하고 저렴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된 규정은 기존 규제 환경, 시장 동향, [금융서비스부의 자체 당좌 대월 연구](#) 및 강력한 이해 관계자 참여를 고려한 DFS의 데이터 기반 정책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금융서비스부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Hochul 주지사의 소비자 보호 제안

Hochul 주지사는 2025년 시정 연설의 일환으로 금융서비스부에 양질의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착취적인 은행 관행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약탈 수수료를 금지하고 일일 초과 인출 수수료 수를 제한하며 시기 적절한 알림을 통해 투명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모든 뉴욕 주민이 은행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매 판매자에게 다양한 상품에 대해 최소 30일의 반품 기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Hochul 주지사는 온라인 쇼핑객에게 개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될 때 이를 알리도록 하는 국내 최초의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취소 절차가 간단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진행되어 가입과 마찬가지로 구독 취소가

쉬워지도록 하는 추가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제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및 감독 체계를 수립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에게 미수령 자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 서비스 기업(Energy Service Company, ESCO)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CO에도 전력 회사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고령자 금융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 및 기타 기관에 특정 의심스러운 거래를 일시 중지하고 착취 및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법 집행 기관 및 성인 보호 서비스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